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71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무임
- 나.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 관련 전문법인 또는 단체의 기술과 전문성, 노하우를 활용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무로,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 서울시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5~13세)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위탁기간 : 2024.1.1.~2026.12.31.(3년간)
 - ※ 현 수탁법인 :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위탁금액 : 271백만원('23년)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

○ 민간위탁 필요성

- 서울시 전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으로, “아동”과 “안전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전문적인 교육 인력과 장비,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에의 위탁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매년 재난대비 안전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9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박 진 (☎ 2133-5180)